

공기호흡기 용기 등 안전관리 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자 : 소방교 한지훈  
 ■ 확인자 : 염리119안전센터장 김제현

한지훈인  
 김제현인

본부(부서명)	제조사	제조일	용기번호	사용 충전기 (관리번호, 제조일 등)
염리119안전센터	산청	2013.7	0948KM083	현장대응단 11000010398327 2016.8.24.

근거규정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 고 (사유 등)
제7조제1항제4호 (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	○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	(적)	
제7조제1항제6호 (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	○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 공기호흡기 용기 25MPa,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	(적)	
제7조제1항제7호 (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	○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 세척, 충전,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	(적)	
제8조제1항 (정기검사 등)	○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	(적)	
제8조제3항제1호 (정기검사 등)	○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 부식, 이물질, 수분 등 육안검사	(적)	
제9조제2항 및 제3항 (용기 등의 파기)	○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 절단, 원형 가공불가 조치, 공인검사기관 의뢰	(적)	
제11조제1항제4호 (정비실의 설치)	○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식별표지 포함)	(적)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제1호	○ 용기 재검사 여부 - 10년 이하는 5년, 10년 초과는 3년 -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	(적)	

※ 점검자는 소방서별 지정 점검반원 / 확인자는 점검기관 해당 부서의 장(119안전센터장 등)

공기호흡기 용기 등 안전관리 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자 :

소방교 한지훈

한지훈 (인)

■ 확인자 :

염리119안전센터장 김제현

김제현 (인)

본부(부서명)	제조사	제조일	용기번호	사용 충전기 (관리번호, 제조일 등)
염리119안전센터	산청	2013.7	0883KM083	현장대응단 11000010398327 2016.8.24.

근거규정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사유 등)
제7조제1항제4호 (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	○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	(적)	
제7조제1항제6호 (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	○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 공기호흡기 용기 25MPa,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	(적)	
제7조제1항제7호 (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	○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 세척, 충전,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	(적)	
제8조제1항 (정기검사 등)	○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	(적)	
제8조제3항제1호 (정기검사 등)	○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 부식, 이물질, 수분 등 육안검사	(적)	
제9조제2항 및 제3항 (용기 등의 파기)	○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 절단, 원형 가공불가 조치, 공인검사기관 의뢰	(적)	
제11조제1항제4호 (정비실의 설치)	○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식별표지 포함)	(적)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제1호	○ 용기 재검사 여부 - 10년 이하는 5년, 10년 초과는 3년 -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	(적)	

※ 점검자는 소방서별 지정 점검반원 / 확인자는 점검기관 해당 부서의 장(119안전센터장 등)

# 공기호흡기 용기 등 안전관리 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자 :

소방교 한지훈

한지훈 (인)

■ 확인자 :

염리119안전센터장 김제현

김제현 (인)

본부(부서명)	제조사	제조일	용기번호	사용 충전기 (관리번호, 제조일 등)
염리119안전센터	산청	2015.12	ALT841-77029	현장대응단 11000010398327 2016.8.24.

근거규정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 고 (사유 등)
제7조제1항제4호 (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	○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	(적)	
제7조제1항제6호 (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	○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 공기호흡기 용기 25MPa,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	(적)	
제7조제1항제7호 (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	○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 세척, 충전,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	(적)	
제8조제1항 (정기검사 등)	○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	(적)	
제8조제3항제1호 (정기검사 등)	○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 부식, 이물질, 수분 등 육안검사	(적)	
제9조제2항 및 제3항 (용기 등의 파기)	○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 절단, 원형 가공불가 조치, 공인검사기관 의뢰	(적)	
제11조제1항제4호 (정비실의 설치)	○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식별표지 포함)	(적)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제1호	○ 용기 재검사 여부 - 10년 이하는 5년, 10년 초과는 3년 -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	(적)	

※ 점검자는 소방서별 지정 점검반원 / 확인자는 점검기관 해당 부서의 장(119안전센터장 등)

# 공기호흡기 용기 등 안전관리 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자 :

소방교 한지훈

한지훈 (인)

■ 확인자 :

염리119안전센터장 김제현

김제현 (인)

본부(부서명)	제조사	제조일	용기번호	사용 충전기 (관리번호, 제조일 등)
염리119안전센터	산청	2015.12	ALT841-77121	현장대응단 11000010398327 2016.8.24.

근거규정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사유 등)
제7조제1항제4호 (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	(적)	
제7조제1항제6호 (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 공기호흡기 용기 25MPa,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	(적)	
제7조제1항제7호 (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 세척, 충전,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	(적)	
제8조제1항 (정기검사 등)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	(적)	
제8조제3항제1호 (정기검사 등)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 부식, 이물질, 수분 등 육안검사	(적)	
제9조제2항 및 제3항 (용기 등의 파기)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 절단, 원형 가공불가 조치, 공인검사기관 의뢰	(적)	
제11조제1항제4호 (정비실의 설치)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식별표지 포함)	(적)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제1호	○용기 재검사 여부 - 10년 이하는 5년, 10년 초과는 3년 -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	(적)	

※ 점검자는 소방서별 지정 점검반원 / 확인자는 점검기관 해당 부서의 장(119안전센터장 등)

# 공기호흡기 용기 등 안전관리 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자 :

소방교 한지훈

한지훈(인)

■ 확인자 :

염리119안전센터장 김제현

김제현(인)

본부(부서명)	제조사	제조일	용기번호	사용 충전기 (관리번호, 제조일 등)
염리119안전센터	산청	2016.5	0064KM195	현장대응단 11000010398327 2016.8.24.

근거규정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사유 등)
제7조제1항제4호 (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	○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	(적)	
제7조제1항제6호 (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	○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 공기호흡기 용기 25MPa,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	(적)	
제7조제1항제7호 (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	○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 세척, 충전,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	(적)	
제8조제1항 (정기검사 등)	○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	(적)	
제8조제3항제1호 (정기검사 등)	○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 부식, 이물질, 수분 등 육안검사	(적)	
제9조제2항 및 제3항 (용기 등의 파기)	○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 절단, 원형 가공불가 조치, 공인검사기관 의뢰	(적)	
제11조제1항제4호 (정비실의 설치)	○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식별표지 포함)	(적)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제1호	○ 용기 재검사 여부 - 10년 이하는 5년, 10년 초과는 3년 -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	(적)	

※ 점검자는 소방서별 지정 점검반원 / 확인자는 점검기관 해당 부서의 장(119안전센터장 등)